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유영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47 발의연월일: 2024. 11. 5.

발 의 자:유영하·이헌승·김기웅

권영세 • 우재준 • 강선영

이인선 • 박성훈 • 임종득

김정재 · 박덕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원사업자의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(塡補)받을 수 있으나,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수급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.

이와 동시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,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자료제출과 관련된 현행법상 규정들을 이와 동일한 내용의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」상 규정들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제도 의 통일적 집행을 도모하고 향후 개정시차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 임(안 제29조 및 제35조제4항,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삭제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25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"을 각각 "제3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"으로 한다.

제35조제4항 중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0조 및 제115조"를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"로 한다.

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	제29조(벌칙) ①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	
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	
하의 벌금에 처한다.	
1.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	1
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	제35조제4항에 따라 준용
<u>명령</u> 을 위반한 자	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
	래에 관한 법률」제112조제1
	<u>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제1호의 죄는 <u>제35조</u>	② <u>제35조</u>
<u>의3제1항에 따른 명령</u> 을 신청	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
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	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
제기할 수 없다.	률」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
	<u>유지명령</u>
	.
제35조(손해배상 책임) ① ~ ③	제35조(손해배상 책임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	4
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	
경우 <u>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</u>	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
에 관한 법률」 제110조 및 제	관한 법률」 제110조부터 제11

115조를 준용한다.

제35조의2(자료의 제출) ① 법원 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 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 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 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 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(當否)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 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제출 대상이되는 자료가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(이하 "영업비밀"이라 한다)에 해당하더라도 손해의 증 <u>5조까지</u>-----. <삭 제> 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 이 경우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한다.

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건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있다.

<u>제35조의3(비밀유지명령) ① 법원</u> 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

<삭 제>

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 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당사자 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 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명령으로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그 신청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자가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
- 1. 다른 당사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)
- 2. 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자
- 3.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 비밀을 알게 된 자
- ② 제1항에 따른 명령(이하 "비밀유지명령"이라 한다)을 신 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 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.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가.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 하여야 할 준비서면 나.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

하여야 할 증거

- 다.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할 자료
- 2. 제1호 각 목의 자료에 포함 된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이나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
- ③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1.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
- 2.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
- 3.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사실

- 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-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에 따른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- ⑥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 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 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제35조의4(비밀유지명령의 취소)

-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은 제3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(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수 있다.
-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

<u><삭 제></u>

야 한다.

-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-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 력이 발생한다.
-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 령의 취소를 신청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즉시 그 취소결정을 한 사실을 알려야한다.

제35조의5(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) ① 비밀유지명 령이 내려진 소송(비밀유지명 령이 모두 취소된 소송은 제외 한다)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 여 「민사소송법」 제163조제1 항에 따라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 었던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열 람 등을 신청하였으나 그 절차 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

<u><</u>삭 제>

한 자를 통하여 밟은 때에는 법원서기관, 법원사무관,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(이하 이조에서 "법원사무관등"이라 한다)는 즉시 같은 항에 따라 그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한 당사자(그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제2항 단서에서 같다)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(그 열람 등의 신청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) 그 열람 등의 신청 절차를 밟은 자에게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그 열람 등의 신청 절차를 밟은 자가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등을 하는 부분의 열람 등을 하는

것에대하여「민사소송법」제163조제1항에따른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따른 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도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